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3. 7. 5.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220호로 2013년 6월 2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조례운영의 미비점을 보완·개정하여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
기금 설치 조례」 2건을 동일개정사항으로 일괄상정

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존치 필요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시행하고자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2건의 조례가 일괄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기한만료 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용되는 것으로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인복지상담원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2.3.9, 2005.12.27, 2007.10.15, 2012.8.3>